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(이정헌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호 8934 발의연월일: 2025. 3. 14.

발 의 자:이정헌·박홍배·박민규

박지원 · 김승원 · 정동영

이훈기 • 김영환 • 박용갑

황정아 · 강준현 · 김우영

의원(12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현행법은 사회복무요원의 소집 대기기간이 3년을 초과할 경우 시행 령 제135조 및 시행규칙인 「사회복무요원 소집업무규정」 제49조를 근거로 보충역에서 전시근로역으로 처분을 변경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음. 그러나 보충역 판정자의 증가 및 사회복무요원 복무기관의 부족 으로 인하여 일부 대기자의 경우 장기간 소집되지 못하는 상황이 지 속되고 있음.

이러한 대기기간은 개인의 학업·취업·사회진출 등에 큰 제약을 초래하며, 특히 대기기간 동안 병역 의무의 불확실성이 유지됨에 따라 대기자의 경력 개발 및 사회 적응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침. 또한, 대 기기간이 길어질수록 개인과 사회 모두에게 불필요한 부담이 가중되 며, 병역 이행의 형평성에도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음.

이에 사회복무요원의 대기기간을 2년 이하로 단축할 수 있도록 함

으로써, 대기자들이 안정적인 사회진출을 도모할 수 있도록 하고, 사회복무요원 제도의 운영 효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(안 제65조제9항).

법률 제 호

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

병역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65조제9항 중 "보충역 편입연도"를 "보충역 편입연도부터의 대기기간"으로 하고, 같은 항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이 경우 대기기간은 2년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정하여야 한다.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병역처분 변경에 관한 적용례) 제65조제9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시행 전에 대기기간 기산 시점이 시작된 사람에 대해서도 적용한다.

신・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		
제65조(병역처분 변경 등) ① ~	제65조(병역처분 변경 등) ① ~		
⑧ (생 략)	⑧ (현행과 같음)		
⑨ 지방병무청장은 사회복무요	9		
원 소집 대상자가 제27조에 따			
라 결정된 사회복무요원 배정			
인원보다 많은 경우에는 소집			
대상자의 학력 또는 <u>보충역 편</u>	<u>보충역 편</u>		
<u>입연도</u>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	입연도부터의 대기기간		
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그			
중 일부를 전시근로역에 편입			
할 수 있다. <u><후단 신설></u>	<u>o</u>]		
	경우 대기기간은 2년을 넘지		
	아니하는 범위에서 정하여야		
	<u>한다.</u>		
⑩ ~ ⑬ (생 략)	⑩ ~ ⑬ (현행과 같음)		